

의안번호  
제1417호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. 11. 13.(월)
- 나. 제출자 : 김경환 의원 외 9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11. 16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1. 30.(목)

## 2. 제안이유

- 총선거 후 최초집회의 소집근거 마련과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하게 규정,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신설, 의회 자율권에 따른 의안 상정시기 등 지방자치 역량과 행정환경 변화의 반영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.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순화된 용어 사용,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고 입법 구성 체계에 맞게 조문 정비 등으로 의회 회의진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총선거 후 최초집회의 소집근거 적법하게 마련(신설, 안 제5조)
- 나.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(신설, 안 제8조)
- 다. 의장단 선출시기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명확하게 규정(안 제11조 ~ 15조)
- 라. 조례안 예고 및 의안의 회부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24조 및 안 제 25조)
- 마. 투표용지의 보존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1조)
- 바. 의안 등의 상정시기를 의회 자율권에 적법하게 규정(신설, 안 제59조)
- 사.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2조)

- 아. 심사보고서의 작성 제출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가능토록 함(안 제 67조)
- 자. 예결위원회 심사시 상임위 심사 결과 존중 안 신설(안 제71조제3항~ 제4항)
- 차. 기금운용계획안(안제75조),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(안 제77조), 기금결산 보고서(안 제78조) 신설
- 카. 규정질문에 관한사항 개정(안 제80조), 긴급현안질문(안 제81조) 신설
  - 질문요지서는 질문예정일 5일전 의장 제출, 의장은 질문예정일 3일전
  - 구청장 송부(토, 공휴일 제외)
  - 재적의원 1/3이상의 찬성으로 규정 특정분야 또는 긴급히 발생한 현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가능, 질문예정일 1일전까지구청장 송부
- 타.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를 그와 관련되는 회의록 부록으로 게재 (안 제82조제5항)
- 파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순화용어 사용, 띄어쓰기 등 정비

#### 4. 근거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의2, 제43조, 제55조의2, 제71조, 제85조, 제 89조
- 나.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(행정자치부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#### 5. 검토의견

-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,
  - 총선거 후 최초집회에 관한 소집근거의 적법마련과 의장, 부의장

- 의 선출시기와 그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,
- 의장단 선거 등에 사용한 투표용지의 보존과 의안 등의 상정시기를 의회 자율권에 맞게 정하고,
  -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정비와,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,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,
  - 규정질문서 질문서 제출 및 송부 기일에 토,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고 규정의 특정분야나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긴급현안질문 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는 등
  - 1997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지방의회 자치역량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부개정방식으로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중구의회 회의운영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규칙입법의 절차이행과 상위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생각됨.

## 6. 첨부 :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안